

스마트개표시스템 용역계약서

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(이하“갑”이라 한다.)과 주식회사 트윈티아이피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“갑”의 총회 개최 시 스마트개표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서(이하“계약서”)를 체결한다.

- 용역명 : 장대B구역 임시총회 스마트개표시스템 사용 용역
-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업무종료일까지
- 용역금액 : 일금 이백오십만원(W2,500,000원/V.A.T별도)

연번	분류	사용여부	금액	비고
1	개표시스템	○	250만원	V.A.T 별도
2	총회결과보고시스템	○		
합 계			W2,500,000원/V.A.T별도	

2024년 11월 30일

위 계약자,

“갑” 주 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1 3층
상 호 :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
조합장 임 은 수 (인)

“을” 주 소 :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40길 14, 2층(면목동)
업 체 명 : 주식회사 트윈티아이피
대 표 : 김 성 희 (인)

용역계약조건

제1조(총칙)

“갑”은 정확하고 신속한 총회 진행을 위하여 “을”의 스마트개표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“을”에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본방침을 신속히 제공하고 이에 “을”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제2조(용역의 범위)

스마트개표시스템 중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위탁한 업무

제3조(용역금액 및 지급방법)

용역대금은 갑지의 표에 표기된 금액으로 하며, 지급 방법은 총회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.

제4조(용역기간)

용역기간은 계약일 부터 “갑”의 총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.

제5조(계약의 해지)

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고의적 또는 중대과실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“을”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“을”은 “갑”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“갑”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계약해지 시 “을”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각종 자료는 “갑”에게 귀속한다.

제6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

“을”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“갑”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7조(비밀준수)

“을”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, 각종 정보는 용역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전부 폐기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제8조(계약의 효력 발생)

본 계약 체결 후, “을”의 업무개시일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9조(계약외의 사항)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10조(소송의 관할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“갑”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11조(특약사항)

① “갑”의 귀책사유로 총회 연기(총회 7일전) 시 용역비용의 50%를 “을”에게 지급(총회 연기일 기준 7일 이내)하며, 총회 진행 후 남은 50%를 지급한다.

② “갑”의 귀책사유로 총회(당일)무산 등 계약이행 불능 시 용역비용의 100%를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
③ “갑”과 “을”의 협의된 용지 외에 사용된 용지(서면결의서 및 투표용지 등)는 총회 당일 개표 지연 및 오류(규격용지 미 사용, 복사 용지 사용, 용지 걸림, 집계 오류 등)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“을”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 (끝)